

2022-2023

제 49 차 총회에서 각 노회로 내려 보내어
투표, 조언 및 동의를 구하는 헌법 수정안

주: 서기는 제안된 수정안들을 총회가 승인한 최종 형태로 보낸다.

1 변항: 헌법 7장을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어떤 직분에도 자격이 없도록 수정한다.
[헌의안 15는 수정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수정하여 추가된 헌법 7장 4 조는 다음과 같다:

헌법 7-4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고 독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국 장로교 안에서의 어떤 직분도 가질 자격이 없다.

2 변항: 헌법 8장에 새로운 8항을 추가 삽입하여 군목에 대한 보증 요건과 추천 조항을 삽입하고, 아래 항목들의 번호를 그 다음으로 바꾸어 수정한다.
[헌의안 28은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8-8. 한 노회는 임의로 한 강도 장로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미국 장로교 관할권 밖에 있는 조직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도록 청빙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이는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종사할 것과, 또한 그가 우리 교단의 교리를 유지하고 가르칠 전적인 자유를 가질 것을 노회에 보장하고, 또 그가 최소한 일 년에 한번씩 사역에 대해 보고한다는 조건 아래에 할 수 있다. 군목으로 섬길 때에 그 군목은 전도 목사의 사역에 임명될 수 있다. 유급 또는 무급 군목으로 섬기는 강도 장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총회가 인가한 지지 단체로부터 교회적 보증서를 구함으로 취득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8-89. 율법 아래 있던 교회 안에 다스림을 위해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아래 있는 교회 안에도 말씀 사역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도록 불러 위임하는 자들을 치리장로라 부른다.

8-910. 장로는 교회 직분 중의 한 종류이므로, 치리장로는 교회의 치리회에서 강도장로와 마찬가지로 직분에 대한 동일한 권한과 자격을 갖는다. 치리장로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의 자질을 열심히 계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3 번항: 헌법 15-1 및 15-3 을 한 노회의 전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헌의안 25 는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15-1. 일반 위원회가 심사, 숙고, 보고하도록 임명된 반면, 전권위원회는 ~~교회헌법 15-3~~ 하에 임명된 노회의 법사 전권위원회의 소송 사건을 제외한, 위탁된 업무를 심의하여 종결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위원회와는 다르다. 전권위원회는 그 진행상의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치리회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제출되면 임명한 치리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나, 제출한 날짜가 권징조례 아래 보관 요건 상 “치리회의 회의 날짜”가 되지만, 헌법 42-4 와 43-3 의 “통보” 날짜들은 예외로 한다. 교회헌법 15-3 에 정해진대로 노회 전권위원회가 당회나 법사 전권위원회의 역할을 할 경우는 예외이다. 당회나 노회의 전권위원회의 해산의 유효일은 그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원이나 상소를 접수하도록 허락된 시기가 끝날 때보다 먼저일 수 없다. 기일 내에 접수된 어떤 소원이나 상소라도 그 전권위원회가 판결을 내려서 그 문제가 반드시 그 전권위원회나 그 상회 치리회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전권 위원회가 임시 당회로 섬기도록 임명되면, 전권위원회의 조치는 노회의 조치가 아니라, 당회의 조치이다. 노회나 혹은 당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전권위원회는 일체의 회의록과 활동상황 보고서를 적어도 1 년에 한 번 매년 그 전권위원회를 위임한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3. 노회는 전체로서 (엄격하게 헌법에 관련된 어떤 문제든 아래 열거된 선택 조항과 함께 연구 위원회에 위탁시킬 권리를 포함해서) 관할권 내 재판 사건을 취급할 수도 있고, 재판 절차 여부를 떠나 (헌법 31-38) 사건에 대하여, 문의 (헌법 41), 상소 (헌법 42), 소원 (헌법 43), 헌법 40-5 의 절차에 대하여, 또는 노회 앞에서 적절하게 최초 관할권(헌법 33-1)을 양도 받으려는 요청에 대하여 청문할 수 있고, 아니면 노회가 자체의 결의로 어떤 법적 소송이라도 전권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전권위원회는 소송건을 제출한 교회의 당회원이 아닌 다른 노회원 중에서 노회가 임명해 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명시된 방법대로 그 소송을 재판하고 그 소송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와 그 판결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토론없이 그 판결을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고, 아니면, (토론할 수 있는 결의), 엄격하게 헌법에 관련된 어느 문제(들)는 연구위원회에 이관시킬 수 있다. 이관시킬 경우, 노회는 그 소송으로 야기된 특수 죄과의 일부나 전부를 기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연구위원회의 보고가 청문되고 토의된 후에라야만 그 소송건을 결정할 수 있다. 노회가 가결하면, 전권위원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노회의 회의록에 결정사항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노회의 결정이 될 것이며, 그 사건의 진술과 판결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노회가 부결하면, 노회는 그 소송을 노회 전체로서 청문하거나, 소송을 재 청문할 새 전권위원회를 임명한다.

그러므로 수정된 헌법 15-1 과 15-3 은 아래와 같다.

15-1. 일반 위원회가 심사, 숙고, 보고하도록 임명된 반면, 전권위원회는 위탁된 업무를 심의하여 종결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위원회와는 다르다. 전권위원회는 그 진행상의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치리회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제출되면 임명한 치리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한 날짜가 권징조례 아래 보관 요건 상 “치리회의 회의 날짜”가 되지만, 헌법 42-4와 43-3의 “통보” 날짜들은 예외로 한다. 당회나 노회의 전권위원회의 해산의 유효일은 그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원이나 상소를 접수하도록 허락된 시기가 끝날 때보다 먼저일 수 없다. 기일 내에 접수된 어떤 소원이나 상소라도 그 전권위원회가 판결을 내려서 그 문제가 반드시 그 전권위원회나 그 상회 치리회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전권 위원회가 임시 당회로 섬기도록 임명되면, 전권위원회의 조치는 노회의 조치가 아니라, 당회의 조치이다. 노회나 혹은 당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전권위원회는 일체의 회의록과 활동상황 보고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매년 그 전권위원회를 위임한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3. 노회는 전체로서 재판 절차 여부를 떠나 (헌법 31-38) 사건에 대하여, 문의 (헌법 41), 상소 (헌법 42), 소원 (헌법 43), 헌법 40-5의 절차에 대하여, 또는 노회 앞에서 적절하게 최초 관할권(헌법 33-1)을 양도 받으려는 요청에 대하여 청문할 수 있고, 아니면 노회가 자체의 결의로 어떤 법적 소송이라도 전권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전권위원회는 소송건을 제출한 교회의 당회원이 아닌 다른 노회원 중에서 노회가 임명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명시된 방법대로 그 소송을 재판하고 그 소송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와 그 판결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판결은 노회의 결정이 될 것이며, 그 사건의 진술과 판결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4 변항: 헌법 16 장을 교회 직분에 대한 자격에 관한 16-4 를 추가하여 수정한다.
[헌의안 29 는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헌법 16

4. 미국 장로교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품행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영화의 단계에서만 영적인 완전함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성화 사역의 견지에서 이생에서 남아 있는 죄들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분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타락한 욕망들의 죄성을 인정하고, 점진적 성화의 실재와 희망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죄악된 유혹들과 성향들과 행위들에 대해 승리할 것을 추구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5 번항: 헌법 21-4 및 24-1 은 안수의 자격에 대한 다음의 문단들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새 종속 문단 [21-4.ㄱ]을 삽입하고, 그 다음 종속 문단들 [21-4.ㄴ-ㅇ]은 [21.4.ㄴ-ㄷ]으로 고친다. 그리고 24-1 은 두 번째 문단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헌의안 31 은 수정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헌법 21

4. 안수를 위한 필수 사항과 절차

ㄱ. 후보자의 개인적 성품의 시취에서, 노회는 잠재적으로 악명 높은 염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집요한 죄악의 욕망들 뿐만 아니라, 죄악의 행위들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그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존함과, 이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혜택들과, 죄를 극복하는 진보(시편 103:2-5, 로마서 8:29)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편 1:3, 갈라디아서 5:22-23), 이 은혜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죄들과 죄악의 유혹들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불완전함은 남아있을 것이지만, 후보자는 회중의 눈에 마치 그것들이 사소한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그 죄들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며, 오히려 그의 거룩함의 진보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9-11).

수정: 현재의 문단들 [21-4.ㄴ-ㅇ]을 [21-4.ㄴ-ㄷ]으로 고친다.

헌법 24.

1. 공천된 자의 개인적 성품의 시취에서, 당회는 잠재적으로 악명 높은 염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집요한 죄악의 욕망들 뿐만 아니라, 죄악의 행위들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그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존함과, 이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혜택들과, 죄를 극복하는 진보(시편 103:2-5, 로마서 8:29)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편 1:3, 갈라디아서 5:22-23), 이 은혜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죄들과 죄악의 유혹들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불완전함은 남아있을 것이지만, 후보자는 회중의 눈에 마치 그것들이 사소한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그 죄들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며, 오히려 그의 거룩함의 진보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9-11).

따라서 수정된 헌법 21-4.ㄱ과 24-1 은 아래와 같이 된다:

21-4. Ordi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ㄱ. 후보자의 개인적 성품의 시취에서, 노회는 잠재적으로 악명 높은 염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집요한 죄악의 욕망들 뿐만 아니라, 죄악의 행위들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그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존함과, 이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혜택들과, 죄를 극복하는 진보(시편 103:2-5, 로마서 8:29)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편 1:3, 갈라디아서 5:22-23), 이 은혜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죄들과 죄악의 유혹들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불완전함은 남아있을 것이지만, 후보자는 회중의 눈에 마치 그것들이 사소한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그 죄들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며, 오히려 그의 거룩함의 진보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9-11).

24-1. (24-1.ㄱ-ㄴ에 이어서)

공천된 자의 개인적 성품의 시취에서, 당회는 잠재적으로 악명 높은 열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집요한 죄악의 욕망들 뿐만 아니라, 죄악의 행위들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그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존함과, 이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혜택들과, 죄를 극복하는 진보(시편 103:2-5, 로마서 8:29)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편 1:3, 갈라디아서 5:22-23), 이 은혜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죄들과 죄악의 유혹들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불완전함은 남아있을 것이지만, 후보자는 회중의 눈에 마치 그것들이 사소한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그 죄들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며, 오히려 그의 거룩함의 진보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9-11).

6 번항: 헌법 31-10 과 33-4 는 재판 전의, 권징이 아닌 정직에 대하여 수정한다.
[헌의안 2021-20 은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헌법 31-10.** 교회 치리회원이 재판 아래 있을 때, 그의 모든 직무를 치리회의 재량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책벌을 가하는 것처럼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헌법 33-4. 고발된 교인에 대한 재판을 즉시 할 수 없을 때에는, 만일 당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조사할 때까지 그에게 수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7 번항: 헌법 33-1 과 34-1 은 최초 관할권 요구를 위한 비율의 한계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헌의안 8 은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33-1. 목사 이외의 모든 한 교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가 소속된 교회의 당회 앞에 제기한다. 단, 상소인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만약 당회가 교리적 소송건들이나 공공 추문의 경우들을 취급을 거부할 기소하지 않을 경우, 같은 노회에 소속된 두 교회 당회가 최소한 십 퍼센트 이상의 교회의 당회들이 동 노회에 그 재판 소송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관할권 및 권한을 양도 받도록 최초 관할권을 양도 받도록 요청하면, 그 노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노회는 그 비용을, 재판을 요청한 당회들과 그 교인의 교회의 당회를 포함한, 당사자들 간에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

34-1. 목사에 대한 소송은 그가 소속한 노회 앞에 제기한다. 그러나 만약 노회가 교리적 소송건들이나 공공 추문의 경우들을 취급을 거부할 기소하지 않을 경우, 두 다른 노회가 최소한 십 퍼센트 이상의 노회들이 총회에 (일차로 소송을 받아서 우선 청문하고 결의하기 위한) 그 재판 소송건에 대한 최초 관할권을 양도 받도록 요청하면, 총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총회는 그 비용을, 재판을 요청한 노회들과 그 목사가 속한 노회를 포함한 당사자들 간에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된 헌법 33-1 과 34-1 은 다음과 같이 된다:

33-1. 한 교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가 소속된 교회의 당회 앞에 제기한다. 그러나 만약 당회가 교리적 소송건들이나 공공 추문의 경우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같은 노회에 소속된 최소한 십 퍼센트 이상의 교회의 당회들이 동 노회에 그 재판 소송건에 대한 최초 관할권을 양도 받도록 요청하면, 그 노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노회는 그 비용을, 재판을 요청한 당회들과 그 교인의 교회의 당회를 포함한, 당사자들 간에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

34-1. 목사에 대한 소송은 그가 소속한 노회 앞에 제기한다. 그러나 만약 노회가 교리적 소송건들이나 공공 추문의 경우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십 퍼센트 이상의 노회들이 총회에 그 재판 소송건에 대한 최초 관할권을 양도 받도록 요청하면, 총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총회는 그 비용을, 재판을 요청한 노회들과 그 목사가 속한 노회를 포함한 당사자들 간에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

8 번항: 헌법 35의 1-5 번 항들은 피해자 보호 규정을 허락하도록 수정하며 (3 항을 추가 삽입함), 따라서 6-14 번 항들은 그 번호들을 고친다.
[현의안 2021-40 은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35-1. 적법한 연령과 지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증인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혹은 장래 상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피고가 증언하는 것이 허락될 수는 있으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단 고소인은 피고가 요구할 때 증언해야 한다. 쌍방 어느 측이든 그 증인이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치리회는 그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한다. 모든 증거에 첨부되어야 할 [재판 자료의] 신빙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치리회 소관이다.

35-2. 피고가 증언하는 것이 허락될 수는 있으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단 고소인은 피고가 요구할 때 증언해야 한다. 어떤 치리회에서도 부부가 서로 반대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35-3. 치리회는, 쌍방 어느 측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치리회 스스로의 결정으로,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 접촉을 방지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ㄱ. 치리회는 화상회의로 증언을 취할 수 있다.

그 화상회의는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동시에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또 양측이 서로 실황으로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ㄴ. 치리회는 피고인이 화상회의의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헌법 32-19) 그 변호인이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다.

ㄷ.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경우에, 만 18세 미만의 증인들이 화상으로 증언하는 것은 서면 질의서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35-

11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맞도록 치리회가 지명한 사람에 의해서 증인에게 낭독되어야 한다.

르. 치리회는 이러한 조치를 제공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어느 한 측의 반대가 있으면 이를 모두 진행 절차의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

35-34. 어떤 경우라도 고소 내용이 성립되려면 한 명보다 많은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증인 한 명의 증언에 추가해서, 그것을 확정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5-5. ~~증인들은 증인을 제시하는 측에 의해서 먼저 심문을 받고, 다음에 반대 측에 의해서 반대 심문을 받는다; 그 후에 치리회의 어느 회원이나 쌍방 중 어느 측이 보충 심문을 할 수 있다. 의장 허락 없이는 아무 질문이나 대답도 할 수 없으나, 치리회에는 호소할 수 있다. 치리회는 문제가 되는 고소 내용에 부적절하거나 경박한 질문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모든 증거에 첨부되어야 할 {제반 자료의} 신빙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치리회의 소관이다.~~

35-46. 만일 쌍방 어느 측이든 반대하면, 치리회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고소건에 대한 다른 증인을 심사하는 동안 그 이후 심사 받아야 할 어느 증인도 그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

헌법 35-6 으로부터 헌법 35-14까지는 35-7 로부터 35-15 로 번호를 고친다.

따라서 헌법 35-1 로부터 35-6 은 다음과 같이 된다:

35-1. 적법한 연령과 지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증인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혹은 장래 상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쌍방 어느 측이든 그 증인이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치리회는 그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한다.

35-2. 피고가 증언하는 것이 허락될 수는 있으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단 고소인은 피고가 요구할 때 증언해야 한다. 어떤 치리회에서든 부부가 서로 반대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35-3. 치리회는, 쌍방 어느 측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치리회 스스로의 결정으로,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 접촉을 방지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치리회는 화상회의로 증언을 취할 수 있다.

그 화상회의는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동시에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또 양측이 서로 실황으로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ㄴ. 치리회는 피고인이 화상회의의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헌법 32-19) 그 변호인이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다.
- ㄷ.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경우에, 만 18세 미만의 증인들이 화상으로 증언하는 것은 서면 질의서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35-11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맞도록 치리회가 지명한 사람에게 의해서 증인에게 낭독되어야 한다.
- ㄹ. 치리회는 이러한 조치를 제공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어느 한 측의 반대가 있으면 이를 모두 진행 절차의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

35-4. 어떤 경우라도 고소 내용이 성립되려면 한 명보다 많은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증인 한 명의 증언에 추가해서,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5-5. 모든 증거에 첨부되어야 할 {제반 자료의} 신빙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치리회의 소관이다.

35-6. 만일 쌍방 어느 측이든 반대하면, 치리회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고소건에 대한 다른 증인을 심사하는 동안 그 이후 심사 받아야 할 어느 증인도 그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

현재의 헌법 35-6 으로부터 헌법 35-14까지는 이제부터 35-7 로부터 35-15 로 번호를 고친다.

9 번항: 헌법 38-1 은 재판할 하지 않는 소송건을 위한 변호인에 관한 것으로, 마지막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 수정한다.

[헌의안 2021-35 는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38-1. 어떤 사람이 치리회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릴 때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죄의 자백을 다룰 때,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리회가 [재판] 절차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리회 앞에서 자백한 그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치리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 하기 전에, 사실 일체의 진술이 피고와 치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피고는 판결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다. 그는 헌법 32-19 의 조항에 일치하게, 어느 시점에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0 번째: 헌법 38-1 과 42-2 는 재판을 하지 않는 소송건에서 책벌을 받은 경우에 상소를 허락하도록 수정한다.

[헌의안 2021-19 는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38-1. 어떤 사람이 치리회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릴 때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죄의 자백을 다룰 때,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리회가 [재판] 절차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리회 앞에서 자백한 그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치리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 하기 전에, 사실 일체의 진술이 피고와 치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책벌은 받은 사람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헌법 42).

42-2. 상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규 재판을 받은 사람들과, 헌법 38-1 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 소송건에서 책벌을 받은 데 대하여 상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법 34-10 의 책벌 없이 해직된 것에 상소하는 사람들이다.

11 번항: 헌법 42-6 은 상소 기간 동안 책벌을 유지하기 위한 투표수에 관해 수정한다. [헌의안 2021-21 은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42-6. 상소의 통보는 동 소송건이 상회에서 최종 결정 될 때까지 하위 치리회의 판결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최초 관할 치리회는, 정식으로 기록된 충분한 사유에 의거, 동 소송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상소인의 수찬을 금지시킬 수 있고, 만일 그 상소인이 직분자일 경우, 직분자로서의 기능 수행 일부 혹은 전부를 금지시킬 수 있다 (교회헌법 31-10 과 33-4 참조). 이것은 결코 책벌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12 번항: 헌법 43-2 와 43-3 은 소원을 심의하기 위한 기간에 대하여 수정한다. [헌의안 21 은 수정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43-2. 소원은 조치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되는 치리회에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소원에 대한 서면 통보는,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치리회 회기가 끝난 후 육십(60) 일 이내에 치리회 서기에게 접수 시켜야 한다. 치리회는 소원을 차기 정기 회의에서 심의하거나, 차기 정기 회의 이전에 임시 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하며, 이는 그 소원이 {회의가 시작되기} 최소한 십(10)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되었을 때에 한한다. 만일 그 소원이 십(10)일 이내에 접수되었다면, 그 치리회는 그 소원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으나 육십(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쌍방 어느 측도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치리회에 회람을 돌려서는 안 된다.

43-3. 만일, 소원을 심의한 후, 범죄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주장되었던 치리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원을 거부하면, 그 소원을 직계 상회에 상정 할 수 있다. 만일 하위 치리회가 그 소원을 차기 정기 회의 때까지 혹은 그 회의에서 반대하여 심의하지 못하면, 그 소원이 최소한 십(10)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된 것이라면, 상소인은 그 소원을 [그 치리회의] 직계 상회에 상정 할 수도 있다. 그 소원이 십(10)일 이내에 접수되었으며, 치리회는 그 소원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육십(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그에 대한 서면 통보서는, 최종 치리회의 조치에 대한 통보일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하위 치리회의 서기와 상회의 서기 모두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최종 치리회의 조치에 대한 통보는 (국내 우체국의 수취인 확인, 등기 혹은 속달, 또는 수취인 확인을 활용하는 모든 사설 우편의 경우) 우송 발송 당일에, 혹은 직접 전달한 당일, 또는 이메일이나 팩시밀리의 경우에는 접수가 확인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성실하게 조회를 한 후에도 당사자의 소재가 확인될 수 없거나 당사자가 배달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그러한 [통보] 요구들에 따를 것은 이행되었다고 요구들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간주된다.